안전보건경영규정

1. 개 요

1.1 목적

본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SK스퀘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고객, 시민, 구성원 및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이자 행동의 기본원칙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지속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고객, 구성원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안전·보건에 대해서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규 및 지침을 적용하고, 다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및 본문에서 별도로 정한 바와 같으며,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 3) CSPO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최고 담당자로서 회사 대표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1) 회사는 고객, 시민, 구성원 및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이자 행동의 기본원칙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지속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한다.
 - (1)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실천에 솔선수범한다.
 - (2) 회사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의 요구사항을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하여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3) 회사는 자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정과 작업 활동에 대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근본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회사는 구성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사고예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 및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한다.
 - (5) 회사는 구성원 및 종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학습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2) 회사는 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근간으로 고객, 시민, 구성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한다.

2.2 CSPO 및 안전보건 전담조직

- 1) 회사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CSPO를 지정할 수 있으며,CSPO에게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 2) 회사는 CSPO 산하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설치가 의무인 경우 회사는 반드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3) 회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구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조직 지침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침을 따른다.

2.32 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

- 1) CSPO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2)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2.4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 1) CSPO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다.
 - (1)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2) 2.3 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2)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예산 관리 지침을 따른다.

2.5 안전보건인력 지정 및 평가

- 1) CSPO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등(이하 본 조에서 "안전보건인력" 이라 한다)를 둔 경우, 안전보건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한다.
 - (1) 안전보건인력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2) 안전보건인력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및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2) 구체적인 안전보건인력의 업무평가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인력 업무평가 지침을 따른다.

3) 회사는 위 지침과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CSPO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6 종사자 협의 및 참여

- 1) CSPO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2)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의견청취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7 재해 대비 및 대응

- 1) CSPO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중대재해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2)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중대재해 대비 및 대응 지침을 따른다.

2.8 도급, 용역, 위탁업체 관리

- 1) CSPO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도급 및 발주 업무 절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2)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도급 등 발주 업무 기준 및 절차 지침을 따른다.

3.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3.1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 1) CSPO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2항 제2 호)를 한다.
- 2) 위 1)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해 조사 및 재발방지 지침이 제정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행정기관의 개선 및 시정명령 이행

4.1 행정기관의 개선 및 시정명령 이행

- 1) CSPO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2항 제3호)를 한다.
- 2)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의 조치 내용 또는 별도의 행정기관 개선 및 시정명령이행 지침이 제정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법령준수

5.1 법령 준수 점검

- 1) CSPO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5.1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2) CSPO는 5.1 1)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1) CSPO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2) CSPO는 5.2 1)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에 따른다.

6. 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6.1 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CSPO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갖춘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2) 6.1 4)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CSPO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등의 실시
 - (2) 6.1 4)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CSPO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한다.
- 4) CSP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 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5) CSPO는 6.1 1) 내지 4)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6) CSPO는 6.1 5)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7) CSPO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4) 공중교통수단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 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8) CSPO는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6.2 공중이용시설 관련 법령 준수 점검

- 1) CSPO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6.2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2) CSPO는 6.2 1)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 CSPO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 4) CSPO는 6.2 3)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6.3 관련 지침

- 1)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침을 따른다.
- 2)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공중이용시설 유해· 위험요인 등 관리 지침을 따른다.
- 3) 그외 사항은 본 안전보건 경영 규정에 규정된 별도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

6.4 적용 범위

본 6장은 회사가 설계·설치·관리 등을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있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 필요할 경우 적용하며, 법령상 관련 의무가 없을 경우 본 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본 사규는 2022. 02. 04.에 제정하여 시행한다.